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3. 4. 14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4월 1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4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88회 임시회

○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(1993. 4. 12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 세 웅)

가. 제 안 이 유

동일구역 동일건축물내에 2개 기관이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북도수영장의 場長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충청북도수영장의 場長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변경함. (안 제4조 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본 개정조례안은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충청북도 수영장과 동일 부지內에 건축됨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로 되어있는 충청북도 수영場長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경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 없 음 "

8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개정 조례안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